

민간위탁금 반납요청 취소청구 재결

위·수탁 협약에 따른 위탁금 반납 요청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18. 청구인에게 한 'A센터 운영' 부적정 사용 민간위탁금 납부 요청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1.부터 2024. 12. 31.까지 피청구인과 A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을 교부받아 A센터를 운영하였고, B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A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조사 결과 민간위탁금 부적정 집행금액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25. 8. 18. 청구인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금 일부 부적정 사용'을 이유로 2025. 9. 17.까지 해당 금액의 납부를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하였다.

관계법령 등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A센터 위탁운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계약이고, 이 사건 요청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비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이 문서는 재결문의 주문·청구취지·사건개요와 적법 여부 판단 부분의 발췌임. 당사자 주장 부분은 생략함. 재결문 원문에는 기관명과 금액이 익명 처리되어 공개되어 있음.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